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02일

광고2동장 인
직권조치사항
직권조치일자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은 *원	은 *원 2003-01-04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호수로152번길 (하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1-12-02